
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(안)

2024. 3.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목 차

I.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의의 및 근거	1
II. 연구제도 개선절차	2
III. '24년도 제도개선 기본지침	3
1. 개선방향(안)	3
2. 상향식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과제 발굴	5
IV. 향후계획	6

I.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의의 및 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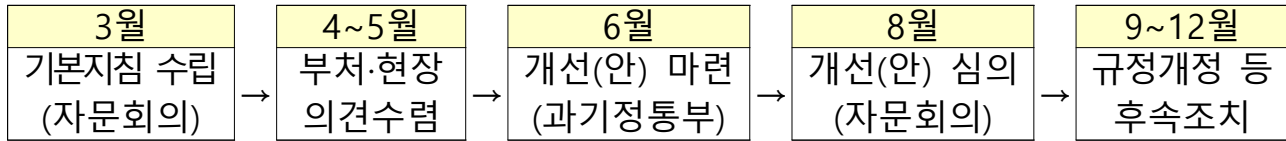
1 의 의

- 현장 중심의 선도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수요에 기반한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* (이하 '연구제도') 개선
 - * 혁신법 및 그 하위규정, 각 부처의 소관 관련 법령·시책 등을 포괄하는 의미
 - 연구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책임성과 자율성 기반의 연구개발 제도를 마련
 - 연구개발 성과제고 및 선도적 연구 촉진을 위해 연구제도의 합리성 제고
 -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연구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·고도화

2 근거 : 「연구개발혁신법」 제28조~제30조

- (법 제28조) 정부는 매년 이해관계인·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, 누구든지 연구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음
- (법 제29조) 연구제도 개선의 체계화된 절차 제시
 - (제1항)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작성(과기자문회의 심의)하고 3월31일까지 관계부처에 통보
 - (제2항) 관계부처, 연구기관 등은 기본지침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을 과기정통부에 4월30일까지 제출
 - (제3항)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(과기자문회의 심의)하고 8월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
 - (제4항) 부처별로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소관 연구개발행정제도에 반영
- (법 제30조) 연구기관 등의 내부규정과 활동에 대해 개선 권고 (과기자문회의 심의)하고, 이행 실태 확인·점검

II. 행정제도 개선절차



① 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기본지침(안) 마련(~3월)

- 현행 연구제도 분석 및 현장 건의사항 등을 기반으로 개선방향(안) 마련
 - ※ 연구개발 제도에 대한 내·외부 의견과 함께 설명회,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검토하여 개선방향(안)에 포함
- 연구현장의 상향식 의견수렴을 통해 주요 개선과제 발굴 병행
 - ⇒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기본지침 확정 및 관계부처 통보

②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의견 수렴(4~5월)

- 상향식 의견 외에도 기본지침에서 제시한 개선방향(안)에 대한 의견 및 이행방안도 제안 가능(IRIS시스템 등 활용)

③ 중요도·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제도개선(안) 마련(~8월)

- 민간전문가 자문·검토 등 통해 우선순위 도출 및 주요방향 검토
- 관계부처·기관, 연구현장 등의 전반적 의견수렴을 통해 적정성, 범부처 적용 가능성 등 추가 검토
 - ⇒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제도개선(안) 심의·확정

④ 규정개정 등 후속조치(9월~)

- 규정개정, 매뉴얼 마련 등 통해 다음년도 시책에 반영
- 개선사항 안내를 위한 설명회, 연구개발제도 교육 등 실시

Ⅲ. '24년도 제도개선 기본지침

1

개선방향(안)

< 2024년 행정제도개선 개선방향(안) >

목표	자율적·선도적 연구 촉진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	
추진 과제	① 평가 전문성·책임성 확보	② 연구자산 보호 및 글로벌R&D 제도 기반 강화
	③ 연구몰입환경 조성	④ 연구윤리 확보

①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평가 전문성·책임성 확보

• 최고 수준의 R&D를 위해 전문성·책임성 있는 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

- 연구개발과제 평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동일 기관 소속 연구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평가위원 제척기준 완화* 추진

* (현행) 동일기관 재직자 → (개선(안)) 동일부서 재직자

- 평가의 투명성·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결과 및 평가단 명단을 피평가자에게 공개하고, 평가위원의 의무 등을 포함하는 행동강령 마련 추진

② 연구자산 보호 체계화 및 글로벌R&D 제도 기반 강화

• 기술경쟁 심화에 따라 주요 연구자산 보호 및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필요

-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세분화*하는 등 연구 성과 및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범부처 연구보안 규정(안) 마련 추진

* 보안과제와 일반과제의 중간등급으로 '민감과제'를 신설하고 보안과제보다 완화된 조치 적용

- 보안과제는 외국인 참여 시 보고 체계를 강화*하고 외국 정부 등의 지배를 받는 연구개발기관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외국 참여 관리
 - * (현행) 부처·국정원 사후통보(보안대책) → (개선(안)) 부처·국정원 사전 보고
- 협약방법·절차, 연구비 집행 등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사항 발굴 및 연구현장 안내 강화 추진
 - ※ 글로벌 R&D사업 추진현황 모니터링 및 현장소통을 통해 지원사항 발굴

3 혁신적 R&D지원을 위한 연구몰입환경 조성

• 혁신적R&D를 통해 우수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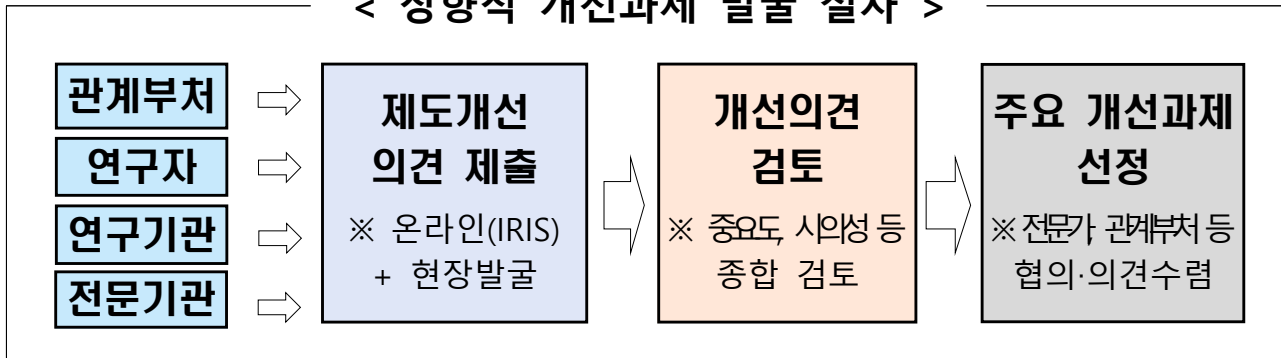
- 우수성과 연구자의 기술료 보상기준 상향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, 민간의 도전적 R&D 참여 촉진을 위해 정부납부기술료 부담 경감 검토
-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, 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를 통한 책임있는 학생인건비 관리 환경 조성
- 연구비가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간접비 원가산출방식 개선 및 연구비 사용용도 명확화 등 개선 방향 검토
 - 또한, 보고서 서식 간소화 등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 방안 검토

4 연구자 보호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한 연구윤리 확보

• 연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의 실질적 연구윤리 의식 확산 필요

- 부정행위 등으로 발생한 환수금·제재부가금 납부 불이행자를 신규과제 평가 시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 책임성 강화 검토
- 부정행위에 대한 연구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제재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기 위한 제재처분 사례집, 설명서 등 마련 검토

< 상향식 개선과제 발굴 절차 >



① 제도개선 의견 접수

-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
 - ※ 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에 '2024년 R&D 제도개선 제안' 게시판 운영
- 연구현장, 부처(전문기관) 등은 기본지침을 고려한 '제도개선 의견 제출서'(붙임)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제안
 - 상향식 의견 외에도 기본지침에서 제시한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및 이행방안도 제안 가능
- 현장방문, 간담회 등 현장소통을 통한 개선사항 직접 발굴도 병행

② 제도개선 의견 검토

- 중요도, 시의성, 연구현장의 공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요 개선과제는 2024년도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
 - 분야별 전문가 검토 및 자문, 관계부처·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, 제도개선(안) 마련
- 중·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'25년 이후 제도개선안에 반영 추진

IV. '24년도 제도개선 향후계획

① 제도개선 의견제출 (연구현장 등, 4월 ~ 5월)

- 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에 'R&D 제도개선 제안' 게시판 운영

② 제도개선(안) 수립 (과기정통부, 6월 ~ 8월)

- 분야별 전문가 검토·자문 등 통한 제도개선 과제 도출
- 제도개선 과제(안)에 대한 관계부처·관계기관 등 의견수렴
-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제도개선(안) 심의·확정

③ 연구개발 제도개선 (관계부처, 9월 ~)

- 부처별로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
- 개선사항 안내를 위한 설명회, 연구개발제도 교육 등 실시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성과평가정책국 연구제도혁신과

담당자 박지영 사무관

연락처 전 화 : 044-202-6953
E-mail : zzero@korea.kr